

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'심판편람' 개정판 활용하세요

- 최근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변화된 실무적 관행 추가 -
- 심판관 및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·대리인도 활용 가능 -

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.

심판편람은 특허·실용신안·상표·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 등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.

개정판(제14판)은 지난번 발간 이후 ①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②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, 최근 법원 판결·판례들을 새로이 수록했다.

①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, 심판-조정연계, 적시제출 주의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, 구술심리·심판사건 설명회, 증거조사, 우선·신속심판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.

②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, 심결일 예고제 등을 심판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, 최근 법원 판결·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할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.

개정된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,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, 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(www.kipo.go.kr/ipt)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.

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“심판편람은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 실무자들에게는 심판 절차와 심리기준을 알려주는 지침서이며, 당사자들에게는 심판진행 과정에 유용한 참고서” 라면서 “개정된 심판편람의 활용으로 내부적으로는 심판관들의 심리 충실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고, 국민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 고 밝혔다.

※ 붙임: 심판편람 개정판(제14판) 표지 및 주요 개정 사항

담당 부서	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	책임자	과 장	마정운 (042-481-5879)
		담당자	사무관	김주영 (042-481-5583)

발간등록번호
11-1430097-000009-14

(ISSN 2092-5697)



구분	관련 심판편람	주요 내용	
법령 등 제·개정 사항 반영	심리제도	▶(전문심리위원) 전문심리위원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기본 운영 방향, 지정·참여 절차, 신청 및 통지서 서식,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반영	
	심리종결	▶(적시제출주의) 「민사소송법」의 적시제출주의 규정을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법에 도입함에 따른 운영방안 및 관련절차 반영 도입	
	합의	▶(심판-조정연계) 심판보다 '조정'에 의한 사건 해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이용하도록 연결해주는 제도 관련 절차 추가	
	거절결정 불복심판	▶(상표부분거절)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거절결정 된 지정상품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가능 ▶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확대(1개월 → 3개월)	
	심판사무 취급규정	신속·우선 심판	▶유사한 신속·우선심판 대상 통합·단일화 등에 의해 제도 정비(신속 : 신청 2개, 심판장 직권 1개 / 우선 : 신청 11개, 심판장 직권 5개)
		심리제도	▶(구술심리) 당사자계 심판의 구술심리 개최 원칙, 기일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허용하도록 개정 ▶(심판사건 설명회) 설명회 신청 시 일정 통지, 변경 신청 등에 대한 서식 안내와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 정비
	증거조사 관련 규정 제정	증거조사	▶「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」 제정으로 증거조사 절차 일반, 증인신문, 검증, 증거물 보관 등에 대한 세부 규정 추가
판례 반영	정정심판	▶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다고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, 상고심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 판단	
기타	심리제도	▶(특별심판부) 고난도 기술분야, 융복합 기술분야, 쟁점이 복잡한 당사자계 심판사건 등에 대한 심판전문성, 심리충실성 향상을 위한 특별심판부 구성 및 운영	
	심리종결	▶(심결일 예고) '심리종결통지서'에 심결할 날짜(심결예정일)를 기재하고, 해당 날짜에 심결하도록 심판절차 개선	
	부록	▶'21~'23년 시행 산업재산권법 개정 내용 신규 추가 ▶코로나 19 대응 관련 심판사무 운영지침 삭제	